



대한민국법원 QR코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5카합1007 선거중지가처분

채 권 자 1. 심동섭 ()

안동시 영남길 15, 행정실(안기동, 영남초등학교)

2. 김필선

안동시

3. 장재영

상주시

채 무 자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해 담당변호사 민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노동조합 사무실(풍천면, 경상북도
교육청)

대표자 위원장 이면승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진

주 문

1. 채무자가 2025. 2. 17.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9대 임원선거 후보자 확정 및 선거일정 공고에 따라 2025. 3. 19.부터 실시 예정인 제9대 임원선거는 대구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가합30009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소재 채무자 사무소 출입구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조합원으로서 채무자의 제9대 임원 선거 중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한 자들이다.

나. 채무자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25. 2. 17. 이 사건 선거일을 2025. 3. 19., 후보자 등록기간을 2025. 2. 20.부터 2025. 2. 26.까지로 하는 선거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선거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후보자가 동시에 한 팀을 이루어 출마를 하여야 하는데, 채권자들은 2025. 2. 26. 채권자 심동섭을 위원장 후보로, 채권자 김필선을 수석부위원장 후보로, 채권자 장재영을 사무총장 후보로 하는 팀으로 이 사건 선거 후보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채무자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25. 2. 27. 채권자들에게 "채권자 장재영의 조합비 미납(2024년 12월분)이 확인되어 위 채권자가 입후보자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입후보자 자격 심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채권자들은 2025. 2. 28. 채권자 장재영이 조합비 완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보완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채무자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채권자들에게 입후보자 자격 심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채권자들 전원의 입후보 자격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이 사건 선거는 기호 1번(이면승, 김보경, 박대상) 단독 찬반 투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고하였다.

마.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이 법원에, 2025. 3. 5.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25. 3. 12. 주위적으로 채무자가 2025. 2. 27. 채권자들에게 한 이 사건 선거 후보자 등록 거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같은 거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25가합30009).

바. 한편, 이 사건 선거와 관련 있는 채무자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 채무자 선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고 한다)에는 아래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9조(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후략)

제12조(징계 및 포상) 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1. 규약, 규정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함이 명백할 때 (후략)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3조(자격심사)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제14조(입후보자의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 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입후보자의 소속, 성명, 성별, 연령, 노조활동경력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후략)

제15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18조(선거운동제한)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를 주고 “경북교육노조” 홈페이지와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즉시 공개해야 한다.
4.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위 5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조합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등 자격기준) ① 조합원의 피선거권과 임원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입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은 선거공고일 기준 180일 이전까지 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비를 완납한 경우에 그 권리를 가진다.

2. 주장 및 판단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후보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인하고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 장재영이 후보자 등록 기간 마감시까지 조합비를 완납하지 않아 채권자들의 피선거권이 확정적으로 상실되었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구성과 적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이나 박탈은 자치법규인 채무자의 규약, 선거관리규정 등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선거가 정당한 피선거권자의 권리를 박탈한 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소명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규약 제9조 제1항 단서, 제2항이 채무자 조합원의 피선거권은 정계를 받거나 일정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가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입후보에 대한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조합비 완납'을 요구하고 있으나 완납의 기한은 따로 규정하지 않은 점, ③ 채권자 장재영이 미납한 조합비가 13,000원(2024. 12. 1회분)에 불과한 점, ④ 채권자 장재영은 평소 자동이체 방식으로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2024. 12.분 조합비 이체 예정되어 있던 2024. 12. 17. 18:30경 및 2024. 12. 20. 18:30경 각 통장잔고가 12,964원 또는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462원이어서 위 조합비가 이체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채권자 장재영이 고의로 위 조합비를 미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채권자 장재영이 채무자로부터 입후보자 심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미 위 조합비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이 사건 선거 후보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이 사건 규약 및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및 비례의 법칙을 위반한 위법한 피선거권 박탈로써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3) 나아가, 채권자들로서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후보자로 등록되지 못하여 피선거권을 누릴 수 없는 중대한 권리의 침해를 받게 되고, 향후 당선자의 당선 효력에 관한 법률적 분쟁이 초래되어 채무자와 그 구성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3. 17.

재판장 판사 이 정 목 전자서명완료

판사 박 민 규 전자서명완료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사 안 철 범 전자서명완료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본입니다.

2025. 3.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법원주사 이재국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